

정 정 신 고 (보 고)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3 년 6 월 27 일

3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	
투자비용	아니오	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	아니오	업데이트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아니오	업데이트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아니오	연혁추가	-	2023. 9. 14 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0 조제 2 항제 4 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-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변동성 변경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아니오	업데이트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</p>	<p>아니오</p>	<p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② 채권 :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취득시 A-이상이어야 하며,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③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⑧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-주식 추가</p>	<p>② 채권 :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취득시 A-이상이어야 하며,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③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⑧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^{주1)} <u>주1)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u> 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<u>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<p>나. 투자제한</p>		<p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</p>	<p>⑨ 증권의 차입-주석추가</p> <p>동일종목투자: 다만, 다음 의 경우에는 10%를 초과 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 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 권 ----- 「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법」 또는 「한국 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「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」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, 「한국주택금융 공사법」에 따른 (이하 중 간 생략)</p>	<p>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p> <p>⑨ 증권의 차입^{주2)} 주2)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 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 입을 진행할 수 있음</p> <p>동일종목투자: 다만, 다음의 경우 에는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--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(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다. 기타위험</p> <p>라. 이 집합투자 기구에 적합한 투 자자 유형</p>	<p>아니오</p>	<p>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p>	<p>-추가</p> <p>※ 최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실제 주간 수익률의 변동성(연환산) : <u>21.04%</u></p>	<p>-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 의 관리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 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※ 최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실제 주간 수익률의 변동성(연환산) : <u>15.84%</u></p>
<p>13. 보수 및 수수 료에 관한 사항</p>	<p>아니오</p>	<p>업데이트 기업공시서식</p>	<p>-</p>	<p>-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</p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개정사항 반영	- 추가	- 증권거래비용, 금융비용 발생내역 명시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	아니오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-	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
1. 재무정보 가. 요약재무정보	아니오	업데이트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- 추가	-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-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, <주식의 매매회전율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아니오	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. 연평균 수익률(세전 기준) 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(세전 기준)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	아니오	업데이트	-	-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-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	
1.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다. 최근2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아니오	업데이트	-	- 당사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-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	
3. 집합투자기구	아니오	자본시장과	2) 환매연기 또는	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

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	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 정사항 반영	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신설)	및 그 사유 (법 제230조에 따른 환 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 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 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